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건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 경위

- 가. 발 의 자 : 유형찬 의원 외 58명
- 나. 의안번호 : 제988호
- 다. 발의일자 : 2016. 2. 11.
- 라. 회부일자 : 2012. 2. 16.

### 2. 주 문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수업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정서불안정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월별 최고 온도가 30℃이상인 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어 학습능률이 떨어지는 등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 한편, 2015년 12월 9일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냉방 시설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중에 있으나 공항소음 피해지역 학교 및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원 대상을

학교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과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할 것을 건의함.

### 3. 제안 사유

- 정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월별 최고 온도가 30℃이상인 달이 5개월에 달하고 있으나 3개월만 지원되고 있다는 점, 소음피해지역에 인접한 학교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유아교육법」상 학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 유치원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 현행 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함.
- 특히 학습권은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소중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능률의 저하와 학생들의 정신건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기타사항: 없음

#### 5.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 6. 검토의견

### 가. 개요

- 본 건의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지원기간도 현행 하절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지역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sup>1)</sup>을 말하며,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김포공항의 경우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일부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음.

<표 1>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현황 (2010. 10. 8)

김포공항	고시현황 (면적, km <sup>2</sup> )	지역
제1종구역	0.8	서울 : 양천구(신월1,2,3 4 6,7동, 신정3동, 신정7동), 강서구(공항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외발산동), 구로구(고척1동, 고척2동)
제2종구역	1.6	
제3종구역	22.2	경기 : 부천시(고강1동, 고강본동), 김포시(고촌읍 태리, 고촌읍 신곡리, 풍무동), 광명시
소계	24.6	인천 : 계양구(평동, 이화동, 하야동, 상야동, 동양동, 노오지동, 굴현동, 선주지동)

1)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소음과는 다름

## 2) 공항소음 대책사업

-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sup>2)</sup>을 말하는 것으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사업대상을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시설에서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로 하는** 내용의 법이 개정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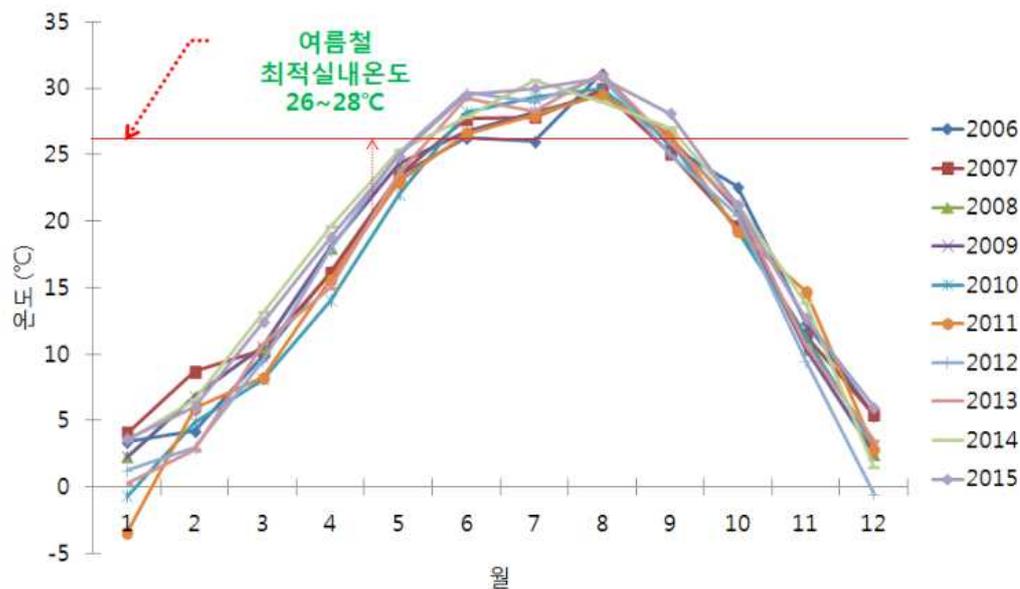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령	제3조(소음대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시설물 중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b>하절기 3개월만</b> 지원한다.	제3조(소음대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b>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b> 따라 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에 대해서는 7월~9월까지 월 50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에 대해서는 7월~9월까지 월 500만원, <b>주민주거용 시설에</b> 대해서는 월 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개정된 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대한 지원기간도 하절기 3개월로(7월~9월) 정해져 있음.
- 본 건의안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sup>3)</sup>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함), 학교 및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난방시설의 전기료 일부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함),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규정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기관인 어린이집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으로 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소음대책지역에서는 공항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해야 하는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과 관련하여 서울지역에서의 최근 10년간 월별 최고기온의 평균값<sup>4)</sup>을 살펴보면, 6월의 경우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인 26℃를 넘어서고 있으며, 5월의 경우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지원기간 확대를 건의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그림 1> 최근 10년간 월별 최고기온 평균

4)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stn=108&yy=2006&obs=08&x=24&y=7](http://www.kma.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stn=108&yy=2006&obs=08&x=24&y=7)

- 따라서, 성인에 비해 외부자극에 민감하고, 활발한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들의 학습능률의 저하와 학생들의 정신건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확대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 계 법 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 관리자에 한한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삭제 <2015.12.31.>
6.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13.3.23., 2015.12.31.>
  -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1.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

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에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시설물 중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하절기 3개월만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